

#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

주체 96(2007)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08 호로 채택  
주체 100(2011)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052 호로  
수정보충

## 제 1 장 배등록법의 기본

### 제 1 조 (배등록법의 사명)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은 배등록과 관련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원만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.

### 제 2 조 (배등록의무)

배등록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.  
국가는 배등록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.

### 제 3 조 (등록된 배의 법적보호)

국가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.

### 제 4 조 (국기계양)

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계양한다.

### 제 5 조 (법의 적용대상)

이 법은 배등록기관과 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에 적용한다.  
우리 나라에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.

### 제 6 조 (배등록의 제외대상)

군함 및 경비용배에는 이 법에 따르는 배등록을 하지 않는다.  
총톤수가 5 미만의 기계배와 배길이 12m미만의 작은 배에 대한 등록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.

### 제 7 조 (배등록분야의 교류와 협조)

국가는 배등록분야에서 국제기구,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.

## 제 2 장 배등록의 신청

### **제 8 조 (배등록신청의 기본요구)**

배등록의 신청은 배등록사업의 첫 공정이다.

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제때에 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## **제 9 조 (등록신청대상의 배)**

다음의 배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배
2.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가 합영, 합작하여 운영하는 배
3.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배

### **제 10 조 (배등록의 신청)**

배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배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.

다른 나라의 배등록신청은 중앙해사감독기관에 한다. 필요에 따라 공화국해사대표기관에 직접 할수도 있다.

### **제 11 조 (배등록신청의 구분)**

배등록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.

1. 새로 건조하였거나 구입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첫배등록신청을 한다.
2. 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의 명칭, 배이름, 선적항, 소유관계, 배구조 같은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배의 변경등록신청을 한다.
3. 대부상환 또는 기타 채무리행담보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배의 저장등록신청을 한다.
4. 빈배용선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빈배용선등록신청을 한다.
5.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배의 진출 및 전입등록신청을 한다.

### **제 12 조 (배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)**

배등록신청문건에는 배의 이름, 선적항, 종류, 톤수, 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의 명칭, 호출부호,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, 기술제원 같은것을 밝히며 배등록신청목적과 내용에 따라 배무이관련증서, 배등록삭제증서, 배연혁기록부, 배매매증서, 채무관련증서, 공증기관확인서, 계약서, 구조변경승인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다.

### **제 13 조 (배등록신청문건의 반송)**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에 밝혀야 할 기재사항이 없거나 틀리거나 첨부하여야 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, 기업소, 단체에 문건을 돌려보낼수 있다.

배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결함을 퇴치하고 배등록신청을 다시 할수 있다.

### **제 14 조 (배등록의 삭제신청)**

우리 나라에 등록하였던 배를 국적제적, 배의 행방불명 또는 침몰, 폐선 같은 이유로 삭제하려 할 경우에는 배등록삭제신청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. 이 경우 신청문건에 배의 이름과 등록번호, 종류, 톤수, 사용년한, 신청리유, 채권채무관계 같은것을 밝히며 해당한 증명문건을 첨부한다.

## **제 3 장 배등록의 심의**

### **제 15 조 (배등록의 심의의 기본요구)**

배등록의 심의는 배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.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, 심중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.

### **제 16 조 (배등록의 심의)**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 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.

배등록심의는 국제항해하는 배와 국내항해하는 배의 등록을 위한 심의와 배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의로 구분하여 한다.

구체적인 배등록심의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.

### **제 17 조 (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)**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등록신청기관, 기업소,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.

해당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

보장하여야 한다.

#### 제 18 조 (배의 톤수측정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할 경우 해당 배의 톤수측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.

국제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하며 국내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국내톤수측정규정에 따라 한다.

#### 제 19 조 (배등록의 승인 또는 부결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한 경우 해당 배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배등록신청기관, 기업소,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.

배등록의 부결통지를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힌다.

#### 제 20 조 (등록할수 없는 배)

다음의 배는 등록할수 없다.

1. 항해감당력이 담보되지 않은 배
2. 해양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배

#### 제 21 조 (배등록의 재심의제기)

배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재심의를 제기할수 있다.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의 재심이가 제기되었을 경우 1 개월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, 기업소,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.

#### 제 22 조 (의견제기)

배등록의 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중앙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할수 있다.

중앙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.

#### 제 23 조 (배의 등록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이 승인된 배를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배의 이름, 선적항, 종류, 톤수, 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의 명칭, 등록번호, 호출부호, 국제해사기구번호,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, 기술제원, 채권채무관계, 등록날자 같은것을 밝힌다.

등록하지 않은 배는 항해할수 없다.

#### **제 24 조 (배등록의 구분)**

배는 국제항해배와 국내항해배로 나누어 등록한다.

#### **제 25 조 (공화국국적소유)**

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.

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배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26 조 (우리 나라 수역에서 경제활동)**

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, 과학연구 같은 경제활동을 할수 없다.

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#### **제 27 조 (등록된 배의 표식과 기술검사)**

배를 등록한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국기와 배의 이름, 선적항, 국제해사기구번호, 만재잠김선 같은것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표식하여야 한다.

배기술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다.

#### **제 28 조 (등록된 배의 범규준수의무)**

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국제협약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.

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운영상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를 등록에서 삭제 또는 정지시켰다 할지라도 공화국의 법적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#### **제 29 조 (배등록의 정지)**

빈배용선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배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어 다른 나라 국적으로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의 신청에 따라 빈배용선하는 기간 그 배의 등록을 정지시킨다.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정지시킨다는 서면동의서를 발급할수 있다.

#### **제 30 조 (배등록의 삭제)**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삭제가 승인된 배를 배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

배등록을 허위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배등록을 삭제한다.

## 제 4 장 배등록증서

### 제 31 조 (배등록증서와 발급)

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한 배에 배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배등록증서에는 배의 이름, 국적, 선적항, 소유관계, 등록날자, 종류, 톤수 및 기술제원, 발급날자,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다.

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.

### 제 32 조 (림시배등록증서의 발급)

해사감독기관은 배를 새로 구입하였거나 배등록증서가 만기되었거나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진것으로 하여 배등록증서가 없이 항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배에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할수 있다.

림시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1~6개월이다.

### 제 33 조(배등록증서의 재발급)

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그것을 분실, 오손시켰거나 회수당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.

### 제 34 조 (배의 항해)

배는 해사감독기관에서 발급한 배등록증서 또는 림시배등록증서가 있어야 항해할수 있다. 그러나 새로 건조하였거나 수리한 배에 대한 시운전을 하려 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등록증서나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받기전이라도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수 있다.

### 제 35 조 (배등록삭제증서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삭제하였을 경우 배등록삭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는 등록이 삭제된 배의 등록증서를 제때에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.

### **제 36 조 (배이름과 선적항, 해당 번호, 부호의 지정)**

배이름과 선적항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.

배의 등록번호와 등록증서발급번호는 해사감독기관이, 배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과감독기관이 정한다.

## **제 5 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**

### **제 37 조 (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)**

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.

국가는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.

### **제 38 조 (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)**

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.

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사업체제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.

### **제 39 조 (배등록자료의 구비)**

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척수, 등록톤수, 배기관출력 및 배수송능력 같은 배등록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갖추고있어야 한다.

해당 기관이나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해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과 관련한 보증을 한다.

### **제 40 조 (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)**

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.

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등록의 신청과 심의, 배등록증서발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.

### **제 41 조 (배등록증서회수)**

비법적으로 배등록증서를 발급받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.

### **제 42 조 (항해증지)**

배등록을 하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할수 있다.

#### **제 43 조 (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)**

이 법을 어겨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, 기업소,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.